

차상위계층 증명서류

증명서		명 의	발급 기관	비 고
1	한부모가족 증명서	본인기준, 부모 및 형제자매 (자녀)	주민자치센터	만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)
2	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		주민자치센터	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
3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	국민건강 보험공단	만성(정신)질환자,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
4	자활근로자 확인서		주민자치센터	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
5	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 액 증명서		주민자치센터	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, 희귀난치 성질환을 가진 자 중,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자, 의료급여를 받는자,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,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, 장애(아동)수당 지급받는자,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.
6	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신청 결과통보서		주민자치센터	증명서 결정내용부분, “보장적합”인 경우만 인정(기초수급자제외)

※ 증명서류관련 설명(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
1. 학생(본인)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만 제출
2.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 + 학생(본인)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
3. 형제자매명의로 증명서 : 증명서 + 부모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
4.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학생(본인)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